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2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정태호 · 권향엽 · 김주영
맹성규 · 조인철 · 이학영
진성준 · 김의겸 · 이연희
박민규 · 이주희 · 이수진
허영 · 이광재 · 최기상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 · 자산 · 교육 · 건강 ·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 · 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 · 자산 · 교육 · 건강 · 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및 취약계층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종합적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
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
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국회
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격차를 말한다.
2. “불평등 완화 정책”이란 불평등 완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다차원적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복수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4.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란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

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불평등 완화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각 영역의 불평등은 상호 연관되어 누적·심화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의 수립·시행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며, 국민의 체감 수준과 실제 현황 간의 괴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6.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불평등 완화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불평등 완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차원적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불평등 완화 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체계

제6조(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불평등 완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불평등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2조에 따른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불평등완화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불평등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① 정부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라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불평등 종합보고서) ① 국무총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3년마다 불평등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5. 그 밖에 다차원적 불평등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종합보고서를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종합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불평등완화위원회) ①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불평등 완화 정책

제13조(소득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분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자산·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주거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산업기반, 재정여건 및 공공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국회 보고)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1조에 따라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